

전자공학과 학생회 회칙

전문

전남대학교 전자공학과는 2020년도 3월, 전자컴퓨터공학부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이 전자공학과로 분리된 학과이며 2021년 11월 선거를 통해 전자공학과 학생회가 건설되었다. 이에 학생회는 학우들의 이익을 옹호,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할 것이며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제반활동을 펼쳐 냄으로써 2백학우의 대리인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

1장 총칙

1조[명칭]

본회는 전남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생회(이하 본회)라고 칭한다.

2조[목적]

본회는 학생회원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진리를 창조하며 순수한 열정과 투명하고 거시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학교의 발전과 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둔다.

3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학과 재학생으로 한다.

4조[가입의 절차와 자격상실]

- 1항. 본회의 회원은 입학, 복학과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
- 2항. 본회의 회원은 휴학의 경우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5조[회원의 권리]

- 1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2항. 본회의 회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의견 개진의 권리를 가진다.
- 3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합법적 활동과 관련한 사항으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4항.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5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와 회원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부당한 침해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 6항. 본회의 제반 자치 활동과 관련한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있다.

6조[본회의 의무]

- 1항.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2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대한 내·외부의 탄압에 맞서 학생회를 지킬 의무를 지닌다.

7조[조직]

본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총회, 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학생회장, 학생회부회장,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2장 전자공학과 학생총회

8조[지위]

전자공학과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9조[구성]

본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자공학과 학생회 회원 전체로 한다.

10조[의장]

전자공학과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부재 시에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11조[권한]

전자공학과 학생총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 1항. 전자공학과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상정한 학생 회원과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항.
- 2항. 전자공학과 학생회 정, 부회장의 탄핵에 관한 사항.

12조[개회 및 의결]

전자공학과 학생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2항에 대해서는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조[소집]

전자공학과 학생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된다.

- 가. 전자공학과 학생 대표자 회의의 요구가 있는 경우.
- 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한하여 학생회장의 권한으로 소집할 경우.
- 다.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장 전자공학과 학생 대표자 회의[학대회의]

14조[지위]

학생 대표자 회의(이하 학대회의)는 학생총회와 운영위원회 사이의 본회의 최고 권력기관이자 의결기관이다.

15조[역할]

학대회의는 각 급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정책을 결정, 집행한다.

16조[구성 및 의장]

학대회의는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학생회장, 부 학생회장, 운영위원회, 남/여 학년 대표로 구성된다. 그리고 의장은 학생회장이 겸임한다.

17조[권한]

- 1항.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심의 의결.
- 2항. 본회 사업 계획의 심의 및 의결.
- 3항.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의결.
- 4항. 본회 각 부서와 특별 기구의 회계 및 기타 사업에 관한 심의.
- 5항. 학생회의 집행 부서장과 특별기구장의 인준.

- 6항. 학생총회의 소집 의결.
- 7항. 학생회의 운영에 필요한 소위원회의 신설.
- 8항. 학생회장, 부회장에 대한 탄핵 발의 및 집행 부서장과 특별기구장의 탄핵소추 및 의결.
- 9항. 학생회의 정, 부회장 선거에 관한 업무.
- 10항. 학대회의는 학생총회가 열리지 못했을 때 학생총회의 안건에 대해 그 권한을 위임받아 의결할 수 있다.

18조[소집]

- 1항. 학대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를 갖는다.
- 2항. 정기 회의는 매 학기 1회로 한다.
- 3항. 임시회의는 운영위원 2/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한하여 학생회장의 권한으로 소집할 수 있다.

19조[개회 및 의결]

학대회의는 재적 인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단,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운영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한다.

20조[탄핵 소추 및 해임 의결권]

- 1항. 학대회의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 회칙을 위반하거나 업무 수행 상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탄핵 발의 할 수 있다.
- 2항. 탄핵 발의는 학대회의 대의원 1/3이상의 연서로 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 발의할 수 있다.

4장 운영위원회

21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관이다.

22조[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 학생회장, 학과 동아리 회장으로 구성된다.(단 동아리 회장이 전자공학과가 아닐 시 동아리 내 임원급 중 전자공학과 학생이 대신한다.)

23조[의장]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부재 시에는 부학생회장이 대행한다.

24조[업무 및 권한]

- 1항. 학생회비를 책정하여 학대회의에 상정한다.
- 2항. 학생회 전반 사업을 검토, 조정, 심의한다.
- 3항.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학대회의에 상정한다.
- 4항. 집행위원회 각 국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5항. 특별기구 업무 집행에 관하여 전반적인 검토, 진행, 심의한다.
- 6항. 임시 학대회의의 소집을 발의할 수 있다.
- 7항. 학생회장이 특별기구 설치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 조정, 심의한다.

25조[소집]

- 1항.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주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항. 임시 중앙위원회는 학생회장의 요구나 운영위원 5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26조[의결]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단 회칙 개정안 발의 안은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5장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제27조[지위]

- 1항. 학생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여 제반 활동을 총괄한다.
- 2항. 학생회장은 학생총회, 학대회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학생회의 의장이 된다.
- 3항. 입후보자 중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4항.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의 결위 시에는 그 직을 승계한다. 결위 이외의 사유로 인한 권한 행사를 못할 시에는 부회장이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28조[임기]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차기 연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로 한다.

29조[업무 및 권한]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1항. 집행위원회 각 부장의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 2항. 학생회와 학생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심의, 조사할 임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3항. 운영위원회 업무를 주관하며 이에 책임을 진다.
- 4항.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과 사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을 계획, 추진할 수 있다.
- 5항.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될 사항 중 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 6항. 기타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30조[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신분보장]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학생총회의 탄핵결의 또는 공무 담임자의 직을 박탈할 수 있는 회칙상 근거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31조[의무]

학생회장은 본회 운영전반에 걸쳐 보고의 의무를 지닌다.

6장 집행위원회

32조[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33조[업무 및 권한]

- 1항. 운영위원회, 학대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 2항. 학생회 사업 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3항. 각 부서의 장은 부서 세로 모임을 주관하며 이를 지도한다.

34조[구성]

1항. 집행위원회는 기획부, 홍보부, 운영부, 총무부를 두고 각 부서의 장과 부원으로 구성된다.

2항. 1항을 기본으로 하되, 매년 학생회 업무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3항.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장이 임명한 각 부서 장으로 구성한다.

4항. 집행위원회의 구성 역할이 변동될 경우, 학생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35조[역할]

기획부 - 각종 행사 및 사업 기획과 학생회의 각 부서별 업무 조정

홍보부 - 학생회 SNS계정 등을 통한 소통 및 학생회 활동의 홍보자료 제작 및 디자인 총괄

운영부 - 학생회 행사 진행 및 보안 전담

총무부 - 학생회비 서류 관리, 비품 구매 및 관리, 자산관리 등 학생회비 관련 전담

36조[임기]

집행위원회 부서장과 부원의 임기는 인준 받은 후부터 학생회의 임기 종료인 12월 31일까지로 한다.

7장 비상대책위원회

37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궐위기간 동안 본 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운영, 집행기구이다.

38조[구성]

비대위는 선거가 무산된 후 7일 이내에 선출한다. 비대위는 비상대책위원장, 부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으로 구성한다.

39조[위원장]

1항. 당해 연도 비대위에서 비상대책위원장, 부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한다. (단, 당해 연도에 선거 후보자로 등록된 자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2항. 부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보좌하며 비상대책위원장 유고 또는 궐위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40조[업무 및 권한]

1항.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총회, 학대회의, 운영위원회의 소집권을 가지며 회의체의 의장이 된다.

2항.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단, 모든 업무 및 권한은 비대위에서 학생회칙 전반을 근거로 진행되어야 한다.

3항. 비대위는 운영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업무와 권한을, 비대위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 준하는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4항. 학대회의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진행한다.

5항. 기타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6항. 단 학생회비 기존 계산식에서 1/5의 비용을 감액한 후 사용 및 배분한다. 감액된 예산은 반드시 선출될 학생회를 위해 이월한다.

41조[임기]

비대위의 임기는 전임 학생회장단의 임기 종료부터 차기 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 까지로 한

다.

42조[선출공고]

선출 공고는 비대위 위원장단 선출 즉시 실시하고, 선출 과정 및 선출 결과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43조[탄핵 및 사퇴]

1항. 비대위원장의 탄핵은 총학생회장의 탄핵 요건을 준용한다.

2항. 비대위장 및 비대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사퇴할 수 있다.

8장 재정

44조[경비]

1항. 본회의 경비는 매해 신입생들이 납부하는 회비와 전 학생회비 이월금, 보조금으로 충당하며 본 회칙에 규정된 활동 이외에는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항. 회비는 1회 납부를 원칙, 현시대의 물가와 학생처의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45조[경비와 관리]

본회는 학생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 집행하며 경비의 관리는 전자공학과 학생회 총무부에 위임한다.

46조[회계연도]

1항.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항. 회계연도는 2분기로 나누되 매달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한다.

47조[환불 및 편입]

1항. 한 학기를 기준으로 재학한 학기를 제외한 나머지 학기만큼을 환불한다. 단, 단순 변심이 아닌 자퇴, 편입, 전과생에 대해서만 해당한다.

2항. 전자공학과로 편입할 경우 한 학기를 기준으로 재학할 학기만큼의 학생회비를 집행한다.

48조[예산의 편성과 심의]

1항. 예산은 전자공학과 학생회 총무부가 학생회의 각 기구별 및 사업계획, 항목별로 편성하여 제출한 것을 학년 대표자 회의에서 심의, 조정, 확정한다.

2항. 예산안이 학년 대표자 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여 학생회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 1개월 이내의 경상비를 집행할 수 있다.

49조[가예산 편성과 심의]

1항.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기간 안에 본 예산이 통과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1개월간의 가 예산을 인정할 수 있다.

2항. 예산 수립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통과된 예산에 대해 가감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50조[예산 집행]

예산 집행 시에는 일체의 경비에 영수증을 첨부하고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일체의 경비사용여부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51조[결산 보고]

1항. 결산보고는 제1기와 제2기로 구분한다.

2항. 전자공학과 총무부에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학대회의에서 보고하고 승인 받는다.

9장 선거

52조[선거 시기]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선거는 임기 30일 이전까지 실시한다.

53조[선거관리위원회]

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및 학생회원들로 구성한다. 단, 입후보가 이에 포함될 경우 입후보자는 제외한다.

2항.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 호선한다.

3항.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54조[선거방법]

1항. 본회의 선거는 직접, 비밀, 보통, 평등선거로 한다.

2항.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후보는 공동 입후보 하고 최다 득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단, 단독 입후보일 경우에는 제적 1/3이상 투표로써 유효 투표수 중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55조[보궐선거]

학생회장의 궐위 시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학생회장 궐위 15일 이내에 부학생회장이 이를 대행하고 학대회의에서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된다.

56조[선거 시행 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 시행 세칙에 따른다.

10장 회칙 개정

57조[발의]

회칙 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항.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발의

2항. 회원 1/4 이상의 발의

3항. 학대회의 1/2 이상의 발의

58조[의결 공포]

발의 시 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30일 이내에 학대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칙은 개정 즉시 회장이 공고한다.

59조[의무사항]

회칙을 제·개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라야 한다.

1항. 회칙 제·개정 시 개정된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2항. 회칙 제·개정 시 학생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다음 학생회에게 인수인계해야 한다.

▣ 부칙

- 1항. 이 규약은 학년 대표자 회의에서 의결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 2항.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 관례에 따른다.